

의안검토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장
2. 건 명 :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3. 안 건 요 지 : 별 첨
4. 검 토 의 견 : 별 첨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7년 9월 10일

행 정 자 치 위 원 회

전문위원 이 희 배

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폐기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본 조례 안은 2007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
2007년 8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
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인용 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
3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 안은

「지방자치법」이 2007. 5. 11.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
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
없는 것으로 사료됨.